

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



Global Market Report

CONTENTS

목 차

요 약 / 1

I. 배경 / 3

II.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현황 / 3

- 1. 미국 수출통제 제도 연혁 / 3
- 2. 수출통제개혁법(ECRA) 주요 내용 / 5
- 3. 미국 수출통제 제도 주요 내용 / 7
- 4. 역외 수출통제 조치 / 12

III. 수출통제 국별 적용사례 / 14

- 1. 러시아 / 14
- 2. 중국 / 16

IV. 현지 반응 및 시사점 / 19

참고자료

요 약

I. 배경

- 미국과 우방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(Export Control)에 현지 관심 집중
 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, 美 정부는 수출관리규정(EAR)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(country-wide)의 수출통제 실시 (2.24)
- 국제 무역·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고찰 필요

II. 미국 수출통제 제도 현황

① (연혁) 美 수출통제 제도는 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에 따라 변화

- 1940년 세계대전 당시 美 의회는 최초 현대적 개념의 수출통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
 - 미국 참전(1941년)과 함께 군수품 외 민간 상품 영역으로 수출통제 확대
- 냉전 당시 수출통제를 외교 및 국가 안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
 - 수출통제법(1949년)을 통해 최초 종합 수출통제 체계 정립
 - 공산 진영과 체제 경쟁을 위해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(COCOM) 발족
- 1960년대 말 미소 화해 분위기 속에 기존 수출통제 제도 재검토 및 규제 완화 진행
 - 수출관리법(1969년, 1979년) 통과로 수출통제 완화 지속
 - 1996년 완화된 수준의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서 ‘바세나르 체제’ 출범
-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‘국제비상경제권법’(IEEP)을 근거로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 살상무기(WMD) 확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출통제 활용

② (수출통제개혁법) 미중 간 무역 기술 경쟁 본격화 속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통과

-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적 권한 일체를 대통령에게 영구 위임 ⇒ 미국 관할 및 역외 수출, 재수출, 이전 등을 조사, 감독, 규제, 금지 할 수 있는 권한 보장
 - 상무부 장관이 통제 품목, 대상, 목록을 수립하고, 수출 감독, 승인, 중지 명령
- ‘신흥 및 기반 기술’을 규정하여 수출통제 대상화
 - 상무부 장관의 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, 민형사상 처벌 규정 강화

③ 수출통제 시스템 개요

- **(법률 근거)**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크게 (1) 법률로 부여된 행정부 권한 (2) 국제 다자 수출통제 합의 체제 (3) 대외 경제제재(sanction) 명령을 근거로 수립
- **(주무기관)**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(1) 무기류 (2) 핵 관련 물자 (3) 국방·민간 이중 용도(dual-use) 관리로 구분 ⇒ 다수의 부처가 분야별 수출통제를 담당
 - 무기류(국무부), 핵 물자(핵규제위, 에너지부, 국무부, 상무부), 이중용도(상무부) 등
- **(규제 대상)**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에서는 크게 (1) 무엇을 (2) 어디로 (3) 누구에게 수출하고, (4) 해당 수출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가 결정
- **(승인 절차)**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(BIS)의 수출 면허 심사 절차는 신청·검토·판정·항소·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청원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원칙

④ 역외 수출통제 조치

- **(FDPR)** 외국산 제품일지라도 미국 기술·소프트웨어·장비·소재를 사용하거나, 이러한 시설을 통해 생산된 경우, 美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
 - FDPR 적용 대상은 크게 (1) 국가 안보 목적 (2) 우주·위성 관련 (3) 국방 무기 관련 (4) 중국 화웨이 대상 (5) 러시아·벨라루스 대상으로 분류
- **(최소허용기준)** 미국 기술이 외국산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소할 경우 ⇒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'최소허용기준' 제도 존재

III. 수출통제 국별 적용사례

- **(러시아)** 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,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(2.24). 이후 후속 개정으로 제재 수위 지속 제고
- **(중국)** 미국 정부는 범국가적 수출통제(러시아 사례)가 아닌 특정 기업, 지역, 이슈(인권·민주주의 등)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중 수출통제 추진

IV. 현지 반응 및 시사점

-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·고용·주문·재고 등 약화 움직임
- 미국, EU 등 국제 제재 공조의 여파로 중국의 대러 수출도 감소세
- 수출통제가 탈세계화(De-globalization)를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
- 美 현지 통상법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수출기업의 주의 요청

I

배경

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, 美 정부는 수출관리규정(EAR)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(country-wide)의 수출통제 실시 (2.24)
 - '18년 적용됐던 중국 화웨이 등 기업 단위의 수출통제에서 벗어나, 사실상 러시아 국가 전체와 군대를 대상으로 한 제재로 확대
- 향후 국제 무역·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필요

II

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현황

1. 미국 수출통제 제도 연혁

- (세계대전) 1940년 세계대전 당시 美 의회는 무기류 및 기술 등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최초 현대적 개념의 수출통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
 - 1941년 미국 참전과 함께 의회는 군수품 외에도 민간 상품으로 통제 범위 확대
 - 미국 헌법은 수출에 대한 의회의 관세 징수권을 불인정 ⇒ 의회는 무기류의 수출물량을 제한하고,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도 발전
 - 전후 美 의회는 대통령의 수출통제 권한을 제한적 확대 (Second Decontrol Act 1947)
 - 식량, 제조품 등의 국제 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활용
- (냉전 시대) 수출통제를 외교 및 국가 안보의 중대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
 - 1949년 최초로 美 의회는 종합적인 수출통제 체계를 확립한 '수출통제법' (Export Control Act of 1949)을 입법 발효
 - 동 입법의 취지로 (1) 국내 경제 보호 (2) 미국 외교적 이익 확대 (3)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제시했으며, 해당 법률은 1969년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존치

- 공산 국가와 체제 경쟁을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 수출통제 협력 체제 구축
 -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공동으로 1949년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(COCOM)와 1952년 대중 수출통제 위원회(CHINCOM)를 출범
 - 1951년 의회는 미국의 원조 수혜국은 미국 수출통제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'상호방위지원통제법'(Mutual Defense Assistance Control Act)을 통과

□ (데탕트 시대) 1960년대 말 미국-소련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미국은 종전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규제 완화 진행

- 1969년 수출관리법(Export Administration Act) 제정으로 1949년 수출통제법 대체
 - 의회는 종전 대통령이 가진 수출통제 권한을 인정하되, 집행 절차 및 의회 보고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
- 의회는 1979년 수출관리법 제정으로 1969년 법을 대체, 수출통제 완화 지속
- 1994년 COCOM이 해체 후, 비교적 완화된 수준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서 '바세나르 체제'(Wassenaar Arrangement)가 1996년도에 새로 출범

< 바세나르 체제 (Wassenaar Arrangement) >

- 1996.7.11.~12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대표가 모여 「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」 출범
- 현재 42개 회원으로 구성된 바세나르 체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이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으로써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체제로서 역할
 - * 회원국에는 북미, 유럽, 아시아 등 주요국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함 (중국은 미포함)
- COCOM이 공산권이라는 명확한 통제 대상을 지니고 있던 반면, 바세나르는 특정 대상 국가 또는 분쟁지역 및 분쟁 가능 지역에 대한 수출 및 기술이전 시 개별국의 판단(national discretion)에 따라 자율 통제 시행

□ (냉전 이후) 수출통제 목적이 체제 경쟁에서 대량살상무기(WMD) 확산 방지로 전환

- 냉전 체제 종식 직후 1989년에 수출관리법(1979년)의 법적 효력 만료
 - 1990년 이후 수출통제 권한은 '국제비상경제권법'(IEEP)을 근거로 명맥 유지
- 부시 행정부 당시에 테러와의 전쟁 및 핵·생화학·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수출통제 제도 활용

□ (최근) 수출통제 제도 개혁 노력과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(Export Control Reform Act) 제정

-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‘수출통제개혁정책’(ECRI, 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) 추진으로 수출통제 시스템의 전면 검토 및 개정 추진
 - △수출집행조정센터 신설 △상업통제 리스트(CCL) 등 통합정리 △수출 허가신청 및 처리를 위한 단일 전산 시스템 구비 등 소기의 목적 달성
- 대중 무역 기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,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(ECRA, Export Control Reform Act)이 높은 지지 속에 의회 통과

2. 수출통제개혁법(ECRA) 주요 내용

□ (권한) 대통령에게 수출통제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영구적으로 위임

- 미국 행정관할 내 특정 제품의 수출(Export), 재수출(Reexport), 국내 이전(In-Country Transfer)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
 -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(a) 핵폭발 장치 (b) 미사일 (c) 화생방 무기 (d) 화학무기 제조 시설 (e) 해외 해양 핵 프로젝트 (f) 해외 군사 정보 서비스 등 일체 활동에 대해 조사, 직간접 규제, 금지할 수 있는 권한
- 상무부 장관은 통제 품목(item), 대상(person) 및 국가 안보와 외교에 위협이 되는 최종 사용(end-uses)에 관한 목록을 수립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며,
 - 통제 품목의 수출을 승인 또는 중지 명령할 수 있고, 특정 수출 물자의 운송 현황을 감시 감독할 수는 있는 권한을 가짐.
- 제정된 ECRA은 별도 개정 입법이 있을 때까지 영구적 법률 효력이 유지됨.
 - 명시적으로 ‘경제 안보’(Economic security)를 ‘국가 안보’(National security)의 구성 요소로서 인정하는 최초의 수출통제법이라는 의미를 지님.

□ (신규조항) ‘신흥 및 기반 기술’(Emerging & Foundational Technologies) 관련 규제 확대 및 수출 허가제(Export Licensing) 엄격화 등 조항 신설

(가) 신흥 및 기반 기술

- ECRN은 상무부는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'신흥 및 기반 기술'을 규정하고, 해당 기술 관련 수출 허가 지침을 수립하도록 명령
-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,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)은 '신흥 기술' 지정을 위한 절차 개시 (2018.11월) ⇒ 업계 의견을 반영 통제 품목 신규 지정 (2020.10월) ⇒ '21년 현재 총 14개 카테고리를 신흥 기술로 지정 관리 중
 - * 신흥 기술 지정은 바세나르 체제 및 호주 그룹 등 다자 협력의 틀 안에서 합의 결정
- 산업안보국(BIS)은 '기반 기술' 지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공개 모집 (2020.8월) ⇒ 기반 기술 지정 리스트는 아직 미선정 상태

< 美 수출통제개혁법 근거 상무부 지정 신흥 기술 리스트 >

기술명	지정일	근거
지리 공간 이미지 자동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	2020.1.6	BIS 공시
바이오 무기 및 24개 화학 처리에 사용되는 일회용 배양실	2020.6.17	호주 그룹 합의
핵산 구성 및 합성 처리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	2020.11.6	BIS 공시
복합 적층가공기술(AM) 및 수치 제어형 컴퓨터(CNC)	2020.10.5	바세나르 합의 (2019년)
극자외선 마스크 가동을 위한 리소그래피 소프트웨어		
5nm 웨이퍼 생산 기술		
컴퓨터 등 인증 및 권한을 우회하는 포렌식 기술		
통신사를 통해 입수된 통신정보, 메타정보 분석 소프트웨어		
준궤도 비행 관련 기술	2019.5.23	바세나르 합의 (2018년)
독립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		
소프트웨어 영구 작동 기술		
포스트-퀀텀 암호화		
수중 청음기용으로 설계된 수중 변환기		
우주선 지원을 위한 특수 제작 항공기		

[자료] 의회 조사처(CRS) 및 상무부 공시자료

(나) 수출 승인제도 개정

- (국방산업 고려) 상무부가 수출 허가 심사 시 해당 수출이 미국 국방산업 기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·반영할 것을 의무화
 - 해당 수출로 인해 △국내 물량 부족 △국내 생산·투자 감소 △유관 고용의 양적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⇒ 국내외 기업이 제출한 수출 허가요청 거절
- (외국인 지분) 미국의 '신흥 및 기반 기술'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정보를 상무부 수출 허가신청 과정에서 공개하도록 규정

- (부처 간 업무조정) 해당 수출 관계 주무부서(예를 들어 국방부)가 상무부의 수출 허가 결정에 반대하면, 상무부가 내린 수출 승인을 번복할 수 있는 장치 마련

(다) 기타

- (집행권 확대) 상무부 장관의 수출통제 집행 관련 권한을 대폭 확대
 - 상무부 장관 직권으로 국내외 기업 조사, 정보요구, 관계자 소환, 임시 수출 금지, 배송 검사 및 확인, 영장 집행 및 소환 등 가능
- (처벌강화) 법률 위반 시 민사 처벌로 벌금 25만~30만 달러 또는 거래 액수의 두 배를 징수, 형사 처벌로는 1백만 달러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 가능

3. 미국 수출통제 제도 주요 내용

가. 법률적 근거

-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크게 (1) 법률로 부여된 행정부 권한 (2) 국제 다자 수출 통제 합의 체제 (3) 대외 경제제재(sanction) 명령을 근거로 수립
 - 미국은 다수의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이며, 미국 국내 수출통제 관련 법 및 규정(laws and regulations)을 통해 다자 간 합의 의무를 준수
- 미국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는 △호주 그룹(Australia Group) △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(MTCR) △핵 공급자 그룹(NSG) △바세나르 체제 등이 있음.
 - 또한, 2004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서 1540호 내 비국가 단체(non-state actor)의 핵, 생화학 무기 등 취득 확산 방지 합의에 기초

나. 주무기관

-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(1) 무기류 (2) 핵 관련 물자 (3) 국방·민간 이중용도(dual-use) 관리로 구분 ⇒ 다수의 부처가 분야별 수출통제를 담당
 - (무기류)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(DDTC)이 '무기통제 리스트'(Munitions List)를 관리하고 해당 무기류 수출 허가제도를 담당
 - 무기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무기류 수출은 국무부 사전승인 필수
 - * 러시아, 중국, 북한, 이란 등 25개 국가에 대한 수출은 승인배제 원칙

- (핵 물자) 핵규제위원회(NRC), 에너지부, 국무부 DDTC 등이 각각 △핵 시설 · 장비 · 소재 △기술 · 서비스 △핵무기 기술 · 원료 등 수출 관리에 역할 분담
 - 부처별 통제 품목을 △핵 시설 · 장비 · 소재 리스트 △상업통제 리스트 (CCL) △무기통제 리스트(USML) △에너지부 특별 관리 활동 등으로 관리
- (이중용도)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(BIS)이 '수출통제개혁법'(ECA)과 '국제비상경제권법'(IEEP)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관리 권한 보유
 - BIS는 상업통제 리스트(CCL)를 통해 대상 품목 관리 ⇒ 수출 허가 여부는 품목과 국가 또는 두 요소를 종합 고려해 판단
 - *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된 북한, 이란, 쿠바, 시리아 이상 4개국은 수출 승인배제 원칙

□ 수출통제 주무기관은 상이한 법 규정에 따라 제각각의 수출허가제도를 운용하는바, 동 보고서는 상무부 BIS의 수출통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다룸.

< 미국 수출통제 분야별 시스템 비교 정리 >

구분	이중용도(dual-use)	무기류(munitions)	핵 관련
법적근거	ECRA of 2018 / 국제비상경제권법(IEEPA)	Arm Export Control Act of 1968, 1976	Atomic Energy Act of 1954
주무부처	상무부 BIS	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 (국무부)	NRA/에너지부/상무부 BIS / 국무부 DDTC
집행규정	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(15 C.F.R. 730)	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(22 CFR 120)	Export & Import of Nuclear Material & Equipment (10 C.F.R 110) 등
관리명단	상업통제 리스트(CCL)	무기통제 리스트(USML)	List of Nuclear Facilities /Material/Equipment 등
허가정책	품목/국가에 근거 판단	USML 품목 대부분 사전 수출 승인 必	일반/특별 수출허가제 운영
유관 다자체제	바세나르 체제 /MTCR/ 호주그룹/NSG	바세나르 체제 /MTCR/ 호주그룹	NSG
처벌	(형사) 1백만 달러 또는 20년 이하 징역 (민사) 최고 30만 달러 또는 거래액 두 배 벌금	(형사) 1백만 달러 또는 20년 이하 징역 (민사) 법정 벌금액 부과	(형사) 1백만 달러 또는 20년 이하 징역 (민사) 법정 벌금액 부과

[자료] 미 의회 조사처(CRS)

다. 규제 대상

미국 수출통제 시스템에서는 크게 (1) 무엇을 (2) 어디로 (3) 누구에게 수출하고, (4) 해당 수출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통제 대상화 여부가 결정됨.

- ① (무엇을) 수출관리규정(EAR)에 따라 BIS는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, 기술, 소프트웨어 등 명단, 즉 **상업통제 리스트(CCL)**를 작성 관리
- CCL은 10개 카테고리과 하위 5가지 기능 그룹(functional group)으로 분류
 - (카테고리) (0) 핵 물질, 시설, 장비 (1) 소재, 유기물, 미생물, 독소(toxin) (2) 소재 처리(material processing) (3) 전자 (4) 컴퓨터 (5) 통신, 정보보안 (6) 센서, 레이저 (7) 항해, 항공 공학 (8) 해양 (9) 우주, 추진시스템으로 분류
 - (그룹) (a) 장비, 조립 및 부품 (b) 테스트, 검사, 생산 장비 (c) 소재 (d) 소프트웨어 (e) 기술로 세분화
 - 상기 분류를 기반으로 개별 통제 품목에 **수출통제분류번호(ECCN)** 배정
 - 개별 ECCN에는 품목 분류와 함께 수출통제 사유가 명시됨. 즉, ECCN이 부여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**상무부의 면허(라이선스) 취득 의무** 발생
 - CCL에 미포함 품목은 **EAR99**로 별도 분류. EAR99 품목은 '저기술 일반 소비재'(low-tech consumer goods)로 일반적으로 수출 면허가 요구되지 않음.
 - 단, 북한·이란 등의 국가로 수출하거나, 최종 사용자(end-user)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필요

< 美 상무부 ECCN 번호 배정 방식 >

3 카테고리	A 그룹	9 통제 사유	81 연번
0-Nuclear Materials, Facilities and Equipment 1-Materials, Chemicals, "Microorganisms," Toxins 2-Materials Processing 3-Electronics 4-Computers 5-Telecomm and Information Security 6-Sensors and Lasers 7-Navigation and Avionics 8-Marine 9-Propulsion Systems, Space Vehicles and Equipment	A-Equipment, Assemblies and Components B-Test, Inspection and Production Equipment C-Materials D-Software E-Technology	0-(NS) National Security (NP) Nuclear Nonproliferation Trigger List items 1-(MT) Missile Technology 2-(NP) Nuclear Nonproliferation Dual-Use 3-(CB) Chem/Bio 5-Civil Satellites/Space 6-Former USML 9-(AT) Anti-terrorism, (CC) Crime Control, (RS) Regional Stability 등	단순 연번

예를 들어 ECCN 3A981(거짓말 탐지기 Polygraphs)의 경우,
 △카테고리 3-전자 ⇒ △그룹 A-완제품 ⇒ △통제 사유 9-반테러/범죄통제/지역안정으로 분류되고 마지막 두 자리(81)은 단순 연번임. [자료 : 상무부 BIS]

연락처 정보, 최종 사용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상무부에 통지해야 함.

- **(Denied Persons List)** 미국 정부가 수출 권리를 박탈한 개인(기업) 명단
-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(기업)과 수출입 거래 시 반드시
사전에 BIS 내 수출집행국(Office of Export Enforcement)에 **상황 고지 의무**

※ 상기 리스트들은 통합감시명단(Consolidated Screening List)에서 모든 통제 대상을 검색
가능 (<https://www.export.gov/article?id=Consolidated-Screening-List>)

- ④ **(용도)** 수출품의 **최종 용도(end-use)**, **최종 사용자(end-user)**가 대량살상무기
확산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⇒ 상무부 등 사전 수출 승인 의무

라. 상무부 수출 면허 심사 승인 절차

- ① **(신청)** 상무부 BIS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 면허 신청 접수

- 수출기업들은 BIS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 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(SNAP)*을 통해 수출 면허 발급 신청서 접수

* www.bis.doc.gov/index.php/licensing/simplified-network-application-process-redesign-snap-r/cin-request

- ② **(검토)** BIS는 신청 접수 9일 내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, 유관 부처에 판단 의뢰

- BIS는 접수 품목의 ECCN을 확인하고, 필요시 국무·국방·에너지부 등 해당
주무부처와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수출 승인 검토 의견 요청

- ③ **(판정)** 신청 접수 30일 내 BIS는 수출 허가 승인 여부 결정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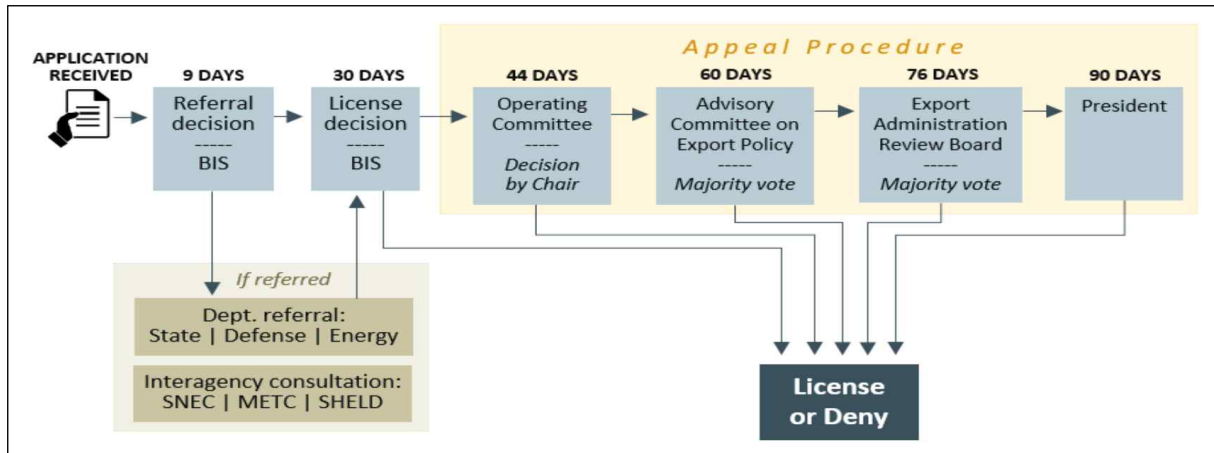
- BIS는 수출 면허 승인 또는 거절을 통지하고, 거절 사유에 관한 근거 소명 必.
30일 초과 시 자동 승인되나, BIS는 판정 기한 연장 권한 보유

* 2020년 BIS는 37,895건 수출 면허 신청 접수 ⇒ 승인(32,687건) / 파기환송(4,754건) / 거절(454건)

- ④ **(항소)** 상무부 판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, 3단계에 걸친 분쟁 해결 장치 작동

- 다수 부처가 참여한 (1) 운영위원회 ⇒ (2) 수출정책 자문위원회 ⇒ (3) 수출관리
검토회의에서 표결 ⇒ 대통령 재가로 최종 결정 (신청 접수 후 총 90일 내)

< 상무부 BIS 수출 면허 승인 절차도 >



[자료] 미국 의회조사처(CRS)

4. 역외 수출통제 조치

가. 해외직접생산품 규칙 (FDPR, Foreign Direct Product Rule)

- 미국은 수출관리규정(EAR) 내 일반 금지(3항) Foreign direct product(FDP) rules를 근거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역외 수출통제 집행 (15 C.F.R. § 736.2(b)(3))
 - 외국산 제품일지라도 미국 기술·소프트웨어·장비·소재를 사용하거나, 이러한 시설을 통해 생산된 경우, 美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
 - EAR 규제 대상에 포함된 특정 해외 생산품은 제품 분류, 도착지, 최종 사용 목적 및 최종 사용자 등에 따라 개별 수출 면허 필요 요건 구성
- 현재 기준 개정 업데이트된 EAR은 FDPR 적용 대상을 5가지 범주로 구분
 - ① 국가 안보 목적 (National Security FDP Rule)
 - 미국의 기술(소프트웨어 등)을 통해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 상업통제 리스트 (CCL)의 통제 사유 기준에서 '국가 안보'에 해당하고,
 - 해당 수출의 도착지가 EAR에서 정한 국가 그룹 D:1 또는 E에 해당하는 경우*
 - * 중국, 러시아, 벨라루스, 북한 등 대상
 - ② 우주, 위성 관련 품목 (9x515 FDP Rule)
 - ECCN 9x515, 즉 민간 위성 및 기타 우주 관련 물자, 기술, 소프트웨어로 분류

www.bis.doc.gov/index.php/documents/regulation-docs/2255-supplement-no-1-to-part-740-country-groups-1/file

되는 제품으로, 수출 도착지가 EAR 국가 그룹 D:1 또는 E에 해당하는 경우

③ 국방 무기 관련 품목 (600 series FDP rule)

- 600 series ECCN*, 즉 국방 물자로 분류되는 제품으로, 수출 도착지가 EAR 국가 그룹 D:1, D:3, D:4, D:5, 또는 E에 해당하는 경우

* 600 series : 국무부 관리 무기통제 리스트(USML)에 포함되지 않은 무기류 품목으로 모든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 면허 취득 의무 (대캐나다 수출 제외)

④ 중국 화웨이 대상 (Entity List FDP rule)

- ECCN 분류상 전자, 컴퓨터, 통신 및 정보보안에 해당하는 기술·소프트웨어 등 제품*으로, 화웨이 및 그 관계사 대상 수출인 경우

* 상무부 상업통제 리스트(CCL) ECCN 번호 : 3D001, 3D991, 3E001, 3E002, 3E003, 3E991, 4D001, 4D993, 4D994, 4E001, 4E992, 4E993, 5D001, 5D991, 5E001, 5E991

- 해당 규정 각주에서 명시한 **Entity List**에 등재된 개인(기업)과의 생산, 연구 개발, 구매, 수출입 거래 등과 관련한 일체 활동에 대한 통제

⑤ 러시아·벨라루스 대상 (Russia/Belarus FDP rule)

-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대러시아·벨라루스 FDPR 적용

나. 최소허용기준 (De minimis Rule)

§ 734.4 and Supplement No. 2 to part 734 of the EAR (2019.11.5. 개정)

-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 및 기술에 미국산(U.S.-origin) (1) 물자(commodity), (2) 소프트웨어 (3) 기술 등이 사용되는 경우 ⇒ FDPR에 따라 해당 외국산 제품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(EAR) 적용 대상에 포함

- 단, 미국 기술이 외국산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소할 경우 ⇒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'최소허용기준' 제도 존재

- 외국산 최종 가치에서 미국산 비중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출통제 대상

- (0% 초과) 다음 특별 경우에 한정해 최소허용기준을 0% 적용

- 3A001 반도체(메모리 회로 제외), 4A994 고성능 컴퓨터용 초고속 인터넷 기기
- 우주 엔진 관련 기술 (9E003.a.1 through a.8, .h, .i, and .j)
- 특정 컴퓨터 암호화 기술 (5A002, 5A004, 5B002, 5D002)

- 특정 센서 레이저 관련 군용 제품 (6A002, 6A003, 6A993.a) 등
- **(10% 초과)** 국가 그룹 E:1(이란, 북한, 시리아) 또는 E:2(쿠바)로 수출하는 경우
 - 대부분 상업통제 리스트(CCL) 품목과 EAR99 품목(쿠바, 북한, 시리아 수출)은 미국산 비중이 10%만 초과해도 FDPR에 따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
- **(25% 초과)** 다수의 CCL 품목 및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으로 수출되는 EAR99 품목의 경우에 미국산 비중 25% 초과 시, 수출통제 대상

※ (예시) \$600 미국산 반도체 메모리 회로(ECCN 3A001.a.7)가 사용된 독일산 통신기기(\$6,000)가 중국으로 수출 시 : 미국산 \$600 ÷ 독일산 \$6,000 = 10% (U.S. controlled content)
 ⇒ 해당 제품의 대중 수출 최소허용기준 25% 미만 ⇒ 비 수출통제 대상

III 수출통제 국별 적용사례

1. 러시아

- (개요) 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(2.24). 이후 후속 개정으로 제재 수위 지속 제고
 - 미국 및 우방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를 (1) 기술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(2)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효과 기대
- 러시아 국가 전체 대상 수출 면허제(License Requirement) 가동
 - 상업통제 리스트(CCL) 모든 카테고리 0~9 분류*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, 재수출, 이전 시 상무부의 수출 면허 취득 의무
 -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(commercial items)은 수출 면허제에서 제외
 - * (2.24) EAR 개정 시 CCL 카테고리 3~9에 대한 수출통제 발동 ⇒ (4.9) 상무부는 추가로 CCL 카테고리 0~2까지 대상 범위 확대, 쏘 카테고리 대상화
 - 거부 정책(Policy of Denial)을 적용하여 예외를 최소화
 - △항공·항해 안전 △인도주의적 목적 △정부 간 협력 △민간 통신 인프라

△러시아 내 동맹국 기업의 사업 등에만 라이선스 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

□ 군사적 최종 사용(MEU, Military End Use)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

- 군(군수 기업 등)이 최종 사용자일 경우, 군용품 외 전 제품으로 수출통제 확대
 -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까지도 수출 면허제에 포함 (일부 예외)*
- * 단, 식품 또는 의약품(EAR99),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(ECCN 5A992.c), 소프트웨어(ECCN 5D992.c)는 규제 면제 가능

□ 해외직접생산품 규칙(FDPR) 신규 적용

- 대러 수출 전체에 적용 ('Russia FDP rule')
 - 해외에서 (1) 미국의 기술·SW로 직접 생산된 제품, 또는 (2) 미국 기술·SW로 설립된 공장 또는 부품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제 적용
 - 단, 러시아 국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재(Consumer Items)는 제외
- 러시아 최종 군사 용도 품목 적용 ('Russia-MEU FDP rule')
 - 미국의 기술, 장비, 소프트웨어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별도로 지정된 Entity List 대상에 수출하는 경우 ⇒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필수
 - * 상무부는 러시아 군사·보안·연구개발을 지원한 91개 단체를 추가 Entity List에 포함 (러시아 81개, 영국 3개, 스페인 3개, 에스토니아 3개, 카자흐스탄 1개 등)
- 유사 조치를 채택하는 협력 국가에 대한 FDPR 규정 면제 혜택
 - 미국의 수출통제 수준의 제도를 채택하거나, 채택 의사를 밝힌 협력국*은 FDPR 적용에서 제외 ⇒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불요
 - * (2.24) EU 27개국 및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일본, 영국 포함 / (3.7) 우리나라 포함 / (4.8)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 포함

□ 수출 면허 면제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통제 효과 제고

- 다음 상황의 경우에 상무부의 대러시아 수출 승인 취득 의무에서 면제 가능
 - △언론보도 목적 △특별 정부 활동 △러시아 내 미국 또는 동맹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△무기류 제외 일반 수하 물품 △항공 여객 관련 △암호화 관련(군용 제외) △개인 통신기기(군용 제외)

□ 러시아 에너지 섹터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

- 러시아 심해 석유·가스 시추 산업에 대해 미국의 수출 및 미국의 기술이

사용된 해외 생산 제품의 수출을 통제 대상에 포함 (3.4)

□ 대러 사치품 수출통제 명령

- 러시아 및 러시아 신흥재벌에 대한 사치품 수출 시 수출 면허 취득 의무
 - 사치품은 주류, 담배, 화장품류, 피혁류, 모피, 섬유 의류, 귀금속, 자동차, 시계, 악기류, 예술품 및 기타 등 해당

□ 러시아 민항기 · 항공사 대상 제재

-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소속 민항기 153대에 대한 수출통제 명령 (급유, 정비, 수리, 부품 교체 등 포함)
- 같은 혐의로 러시아 항공 3사(Aeroflot, Azur Air, UTair)에 대한 임시 수출거부 명령(TDO, Temporary Denial Orders)* 발동

* TDO를 통해 해당 개인(기업)의 수출 또는 재수출 권리가 180일간 중단(효력연장 가능)

<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경과 현황 (2022년) >

일자	주요 내용	관련 정부 발표(상세)
2.24	대러 수출통제 강화 목적 규정 개정	https://go.usa.gov/xzZAe
3.02	대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	https://go.usa.gov/xzZAz
3.04	러 에너지 섹터 제재 및 Entity List 추가	https://go.usa.gov/xzZAS
3.07	한국 FDPR 면제 결정 발표	https://go.usa.gov/xzk2C
3.11	대러 사치품 수출통제 발표	https://go.usa.gov/xz5MP
3.18	러시아 민항기 제재(1)	https://go.usa.gov/xz5MP
3.30	러시아 민항기 제재(2)	https://go.usa.gov/xu3Dm
4.01	러시아 · 벨라루스 Entity List 120개 추가	https://go.usa.gov/xu3Dn
4.07	러 항공사 대상 임시 수출거부 명령	https://go.usa.gov/xucvk
4.08	아이슬란드 등 4개국 FDPR 면제 결정	https://go.usa.gov/xucvk
4.09	CCL 수출통제 카테고리 확대	https://go.usa.gov/xuczS
4.14	러시아 · 벨라루스 민항기 제재(3)	https://go.usa.gov/xuTq6

[자료] 미국 상무부 BIS 홈페이지 (4.14 업데이트 기준)

2. 중국

□ (개요)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정책 대응과 미중 간 경제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써 수출통제 체제 본격화

- 중국의 ‘Made in China 2025’ 정책을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‘군-민간 기술 융합 프로그램’(MCF, Military-Civil Fusion)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원인
- 미국 정부는 범국가적 수출통제(러시아 사례)가 아닌 특정 기업, 지역, 이슈

(인권·민주주의 등)에 국한한 방식으로 대중 수출통제 추진

□ 대화웨이(Huawei) 수출통제

- 미국은 5G 기술 및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하는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 ⇒ 화웨이 및 68개 관계사를 상무부 Entity List에 등재 (2019.5.21.)
 - 해당 조치는 화웨이의 미국 재무부 대이란 경제제재 규정 위반 혐의 및 국제비상경제권법(IEEPA)에 근거하여 발동
 - * 이후 BIS는 화웨이 관계사 46개를 Entity List에 추가 등재 (2019.8월)
- 화웨이와 그 관계사에 대한 EAR 규제 품목 수출은 전면 금지가 원칙이나, 아래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BIS는 '임시 일반 수출 면허' (TGL, Temporary General License)를 발급하여 수출 허용
 - (1) 기존 네트워크 및 장비의 운용 연속을 위한 목적
 - (2) 기존 송수신 단말기(Handsets)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지원
 - (3) 기존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및 네트워크 안정화 연구
 - (4) 5G 국제 기술 표준 정립에 필요한 활동
- 해외직접생산품 규정 (FDPR)
 - 상무부 BIS는 EAR의 일반금지(3항)를 개정(2020.5월)하여, Entity List에 등재된 화웨이 및 관계사 대상 수출에 FDPR 적용 결정
 - 따라서, 미국의 기술·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외국산 제품이 화웨이가 생산하는 제품을 위한 부품 또는 장비로 사용되거나, 최종 사용자가 화웨이인 경우 해당 외국산 제품은 미국 당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

□ 군-민간 융합 기술 통제

- 군사 최종 사용(end-use) 및 사용자(end-user)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 확대
 - 상무부는 군대의 최종 사용 및 사용자의 정의를 종전의 군용 제품의 사용, 개발, 생산뿐만 아니라 작동, 설치, 유지, 보수, 검사, 개선 활동으로 확대
 - BIS는 EAR 부속서를 통해 군사 최종 사용자(MEU, Military End-User) 리스트 제도 신설(2020.12월), 현재 56개 중국 기업이 동 리스트에 등재
- 민간 사용에 대한 수출통제 예외 규정 삭제
 - 그 간 민간 최종 사용자(civilian end-user)에게 허용됐던 수출통제 예외가

중국, 러시아, 베네수엘라 및 20여 개국(그룹 D1) 대상 중단 (2020.4.25.)

○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

- BIS는 중국의 대표 반도체 생산기업 SMIC가 중국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, SMIC 및 관계사 10곳을 Entity List에 등재 (2020.12.18.)

○ 슈퍼컴퓨터 기업 파이티움(Phytium)

- BIS는 중국의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기업 '파이티움 테크놀로지'와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7개를 Entity List에 등재 (2021.4.8.)
- 제재 대상 기업들은 중국 군대 및 정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

□ 인권 및 민주주의 수호

- 신장 위그루 자치지역 내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보안기업 20곳과 첨단 감시 기술 기업 8곳을 Entity List에 등재 (2020.5.1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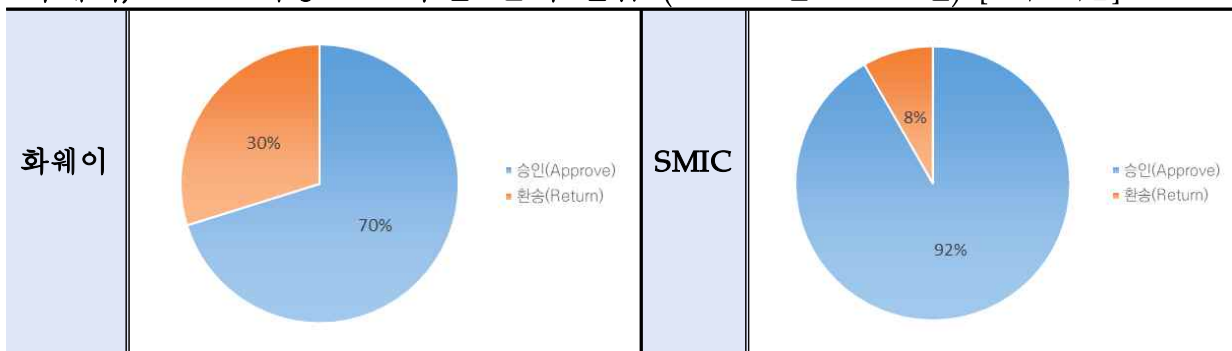
< 미국 상무부 BIS의 대중 수출 면허 발급 통계 현황 >

대중 전체 수출 면허 발급 현황 (2020)

구 분	수출액 (달러)	전체 수출 대비 (%)
전체 대중 수출	1,246억	100%
비 수출통제 대상(EAR99)	1,017억	81.6%
수출 면허 불요	217억	17.4%
수출 면허 발급	4.78억	0.4%
기타	8.72억	0.7%

전체 대중 수출 중 97.9%가 상무부 면허 없이 수출

화웨이, SMIC 대상 BIS 수출 면허 발급 (2020.11월~2021.4월) [건수 기준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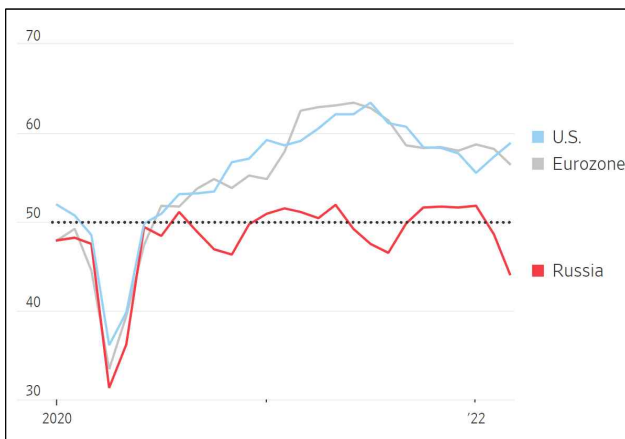
[자료] 미국 의회조사처(CRS) 및 BIS 집계자료

IV

현지 반응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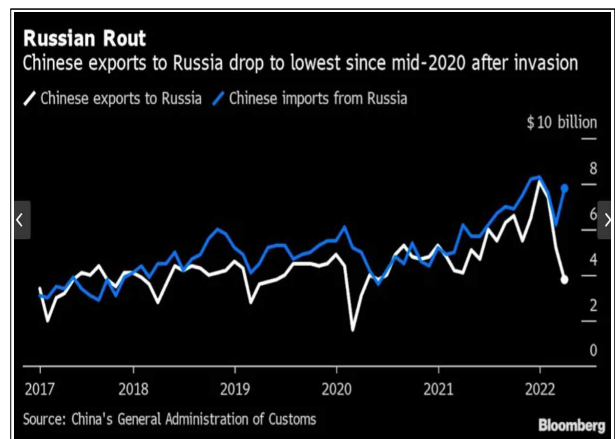
-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·고용·주문·재고 등 악화 움직임
 - S&P Global 집계 러시아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(Purchasing Managers Index)는 2월 48.6 기록 후 ⇒ 3월에는 44.1까지 급감
 - *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경기 하강 국면으로 평가
- 미국, EU 등 국제 제재 공조의 여파로 중국의 대러 수출도 감소세
 - 3월 중국의 대러 상품 수출액은 총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.7% 하락,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상품 수입액은 26.4% 증가
 - 중국과 러시아 정부 간 협력 기조에도 불구하고, 중국 기업들은 환율 불안, 제재 우려 등으로 대러 수출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 중이라고 언론은 분석

< 러시아의 제조업 구매자 지수 추이 >



[자료] S&P Global / 월스트리트저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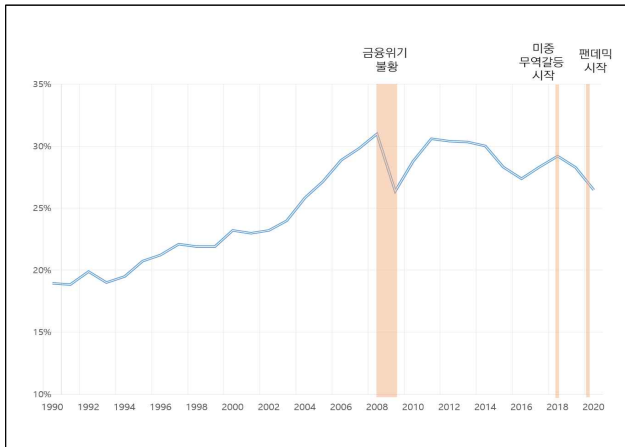
< 중국의 대러 수출입 추이 >



[자료] 중국관세청 / 블룸버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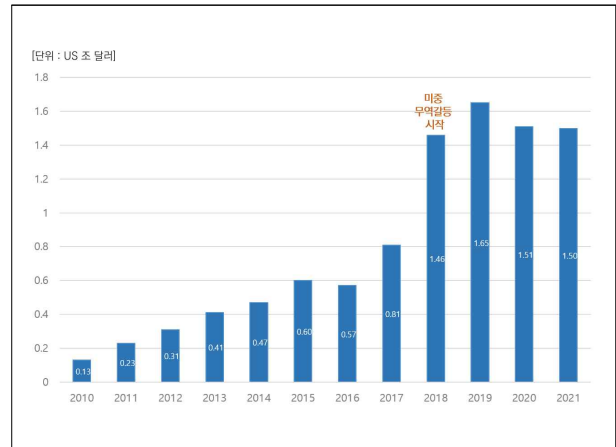
- 수출통제가 '탈세계화'(De-globalization)를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
 - 대중 경쟁 ▶ 팬데믹 ▶ 러시아 사태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 지난 30년간 미국 통상정책의 이념 토대였던 자유무역주의를 침식하고 있다는 견해
 - 글로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6.4%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2008년 31%에 미달
 - 201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 조치(관세 및 비관세장벽) 증가

< 글로벌 GDP에서 수출 기여도 추이 >



[자료] 세계은행(World Bank)

< 글로벌 무역장벽 현황(누적) >



[자료] 세계무역기구(WTO)

* 2021년 추정치

- *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)는 미국 정부가 국제평화의 도덕적 명분과 함께 역외 수출통제 장치인 FDPR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 수출통제 협력 체계를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 (3.7)
- * 외교전문지 Diplomat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러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의 실현 가능성을 다음 3가지 이유로 낮게 평가 (3.8)
 - (1) 중국이 서방 첨단기술을 대체할 기술력(반도체 등)을 아직 미확보
 - (2) 수출통제를 감수하며 러시아를 지원하기에는 중국 경제의 피해
 - (3) 러시아가 전략상 대중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데 소극적일 가능성
- * 조지타운대 제니퍼 힐먼(Jennifer Hillman) 교수는 향후 글로벌 무역 공조 체계는 USMCA 협정과 유사하게 ‘지역적으로(regionally), 우호적인(like-minded)’ 국가 간 연대로 블록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
- * 사모펀드 블랙락 CEO 래리 핑크(Larry Fink)는 “러시아 사태로 30년간의 세계화에 마침표를 찍었다”며 대대적인 공급망 재조정 예상

□ 美 현지 통상법 전문가들은 **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**에 수출기업의 주의 요청

- * 워싱턴 소재 글로벌 로펌 Cooley LLP는 수출통제 위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제안

① 고객, 파트너, 거래처 등에 대한 적격 심사 선행

- 미국, EU, 영국 등 포함 주요 수출통제 국가의 제재 대상 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통제 위반 위험 최소화 노력 필요

- 美 당국은 수출기업에 'Know Your Customer' 원칙을 적용 ⇒ 수출기업은 수출품의 도착지, 최종 사용자나 용도 파악에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 의무
-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출기업은 즉시 당국에 신고 의무 (Red Flag 제도)

② 수출하려는 제품의 수출통제 분류번호 숙지 재확인 필수

- 수출기업은 제품의 분류번호를 재확인하고, 분류번호가 불확실할 경우 상무부 BIS 측에 번호 확인 및 재배정 등 요청 필요

* 일반 상용품(EAR99)이라고 해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러시아 및 중국 등 제재 위험국으로 수출 시 재확인 필요

③ 수출 면허 예외 규정에 대한 재검토

- 최근 수출관리 규정 개정으로 종전까지 수출 면허제에서 제외됐던 품목이 의무 대상으로 전환한 사례 다수 발생 ⇒ 신규 면허 예외 규정 숙지 必

④ 해외 생산제품의 수출을 위한 공급망 평가

- 해외 생산제품 수출 시 FDPR 및 최소허용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

⑤ 고객 및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재검토

- 수출기업은 고객, 판촉 및 유통사 등과의 수출공급 계약을 재검토하여 제재 준수 의무, 최종 사용자 정보, 유사시 계약 종료 규정 등을 확인 必

⑥ 수출 대금 수취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평가

- 고객 및 거래처와 수출 대금 수취를 위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

[끝]

◆ 참고자료 ◆

1. 美 의회조사처(CRS), Export Controls: Key Challenges, 2021.1.14.
2. 美 의회조사처(CRS), The U.S.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 2020.1.28.
3. 美 의회 조사처(CRS), The U.S.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, 2021.6.7.
4. 美 의회조사처(CRS), U.S. Export Controls and China, 2022.3.24.
5. 美 의회조사처(CRS), China's Recent Trade Measures and Countermeasures, 2021.12.10.
6.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, Export Controls : America's Other National Security Threat, 2020.5월
7.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, New technology restrictions against Russia could also target China, 2022.3.7.
8.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, Russia's war on Ukraine: A sanctions timeline, 2022.4.20
9. Morrison & Foerster, "Direct Product Rule" to Restrict Transfers of More Foreign-Made Items to Huawei, 2020.5.28.
10. Crowell, BIS Publishes Final "Direct Product" Rule for Huawei and Entity List Compliance Obligation Clarifications, 2020.8.21.
11. Atlantic Council, Foreign Direct Product Rule: Is Russia the next Huawei?, 2022.2.3.
12. Atlantic Council, US export controls aim to degrade Russia's military
13. Everstream Analytics, U.S. And China Export Control Regulations: Implications For Global Tech Supply Chains
14. The Diplomat, The China Factor in Tech Export Controls Against Russia, 2022.3.8.
15. Gibson Dunn, The World Reacts to the Crisis in Ukraine: A Deep Dive on the New Export Controls, 2022.3.22
16. SSRN, China's Counter-Strategy to American Export Controls in Integrated Circuits, 2021.3.31.
17. PPI, TRADE FACT OF THE WEEK: AMERICA'S 'NON-MEN' TARIFFS ON NATURAL RESOURCES ARE USUALLY LOW, 2022.3.9.
18. Hinrich Foundation, How is China responding to the Ukraine crisis?, 2022.3.1.

그 밖에 월스트리트저널, 블룸버그, 폴리티코, 뉴욕타임즈,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간지 보도 내용

작 성 자

■ 워싱턴무역관

이정민

Global Market Report 22-008

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

발 행 인 | 유정열

발 행 처 | KOTRA

발 행 일 | 2022년 5월
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06792)

전 화 | 02-1600-7119(대표)
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I S B N | 979-11-402-0295-9 (95320)

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